



참여연대

참여연대 공동대표 : 임종대·청 화 110-043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대표전화 : 723-5300 팩스 : 6919-2004 전자우편 : pspd@pspd.org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문서번호 조세-2007-1101

수신 한상률 국세청장 후보자

발신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담당 : 이상민 caticalce@pspd.org)

제목 한상률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공개질의 답변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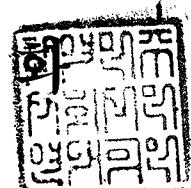
날짜 2007. 11. 26. (총 7 쪽)

한상률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자질 및 세정개혁에 관한 공개질의

1. 우선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2. 국세청장은 국가의 가장 강력한 행정수단인 과세권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세업무를 수행하는 자리로, 어떤 사람이 국세청장이 되는가 하는 문제는 국민들의 큰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최근 조세부담의 적정성과 과세 형평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되는 상황 속에서 국가의 세정부문을 총 책임지는 국세청장이 어떠한 소신과 정책적 비전을 갖고 있는가의 문제는 국민들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3. 참여연대는 국회 인사 청문회를 모니터하고 후보자에 대한 인사의견을 표명하기에 앞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후보자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국민들의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후보자에게 듣고 그 답변 내용을 참여연대 인사의견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충분한 답변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행정에 대한 뚜렷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 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11월 27일 (화) 오후 6시까지 아래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서와 답변은 인터넷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peoplepower21.org>)에 공개될 것입니다. <회신처 : TEL: 02-723-5052 FAX : 02-723-5055 E-mail: fax@pspd.org 담당 : 조세개혁센터 이상민 간사> 끝.

▣ 별첨자료 : 한상률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공개질의서

참여연대 공동대표 임종대·청



한상률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공개질의서

I. 세제 및 세정 개혁에 관한 소신

1. 세정 개혁 방안

후보자는 국세청 차장이라는 위치에서 전 국세청장과 함께 세무행정 개혁을 앞장서 왔습니다. 이에 후보자가 생각하는 그동안 국세청이 추진해 온 세정개혁방안에 대한 평가와 국세청장 후보자로서 효과적인 세정개혁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동안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 ▲ 공평과세를 위한 현금영수증 제도의 성공적 정착 ▲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신고수준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 조세형평성을 위한 핵심적인 조세제도의 미도입 ▲ 기업비자금에 대한 엄정한 대처 미흡 ▲ 세무행정에 있어 부정부패의 만연, 공직기강 문란 등 아직도 여러 분야에서 세정개혁의 강력한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전임 청장의 세정개혁과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국세청장 후보자로서 효과적인 세정 개혁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2. 국세청 내부의 부정부패의 척결

세무행정은 공무원에게 많은 재량권을 허용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있어 전통적으로 공무원비리의 온상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더구나 최근 정상곤 부산청장의 뇌물수수 사건으로 촉발된 전군표 전 청장 구속사건은 국민들에게 국세청이 납세자를 상대로 하는 외부적 부정부패뿐만 아니라 공무원 내부에서까지 부정과 부패가 상존해 있는 후진적인 조직으로 인식시키는 등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후보자는 국세행정에 수십 년 동안 몸담으면서 이러한 국민의 인식과 내부의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국세청 조직을 이끌면서 인사 청탁, 공무원간 조사무마 청탁 등 국세청 내부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3. 국세행정 조직 개편에 따른 세무비리 대책

국세청은 1999년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하여 세무서를 조사, 세원관리 등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하고 세무서 수를 대폭 축소하였으나 최근 다시 법인세, 재산세 등 세목 별 조직으로 환원하고 축소하였던 세무서도 다시 확대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세행정 조직의 환원은 그동안 상호 통제기능을 통한 부패방지보다 취약해진 세원관리의 강화를 주안점으로 둔 것으로, 세무공무원의 세무행정상 부패발생이 더 커질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행정 분야 중 가장 부패한 것으로 아직도 인식되고 있고, 국가청렴위원회 등에서 부패방지를 위한 권고안을 내는 등 세무행정상 공무원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세무행정을 총 책임질 후보자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4. 부실과세 축소와 납세자 권리보호

세무행정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탈세범에게는 매우 강력한 과세권을 행사해야 하면서도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매우 신중하고도 배려 깊은 세무행정을 집행하여야 국가 재정조달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년 불복청구로 인한 부당과세 취소 액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등 부실과세가 여전하고, 세무조사에 있어서는 대상선정과 추징에 있어서 독립성 및 적정성 등으로 많은 국민이 불신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 등 이 분야에 대한 국세청의 지속적이고 다양한 노력이 무색한 실정입니다.

세무공무원이 세무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성실한 납세자에게 부당과세 등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를 보게 하지 않게 하고, 세무조사 등 세무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객관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생각하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II. 조세의 형평성 및 소득재분배기능 제고에 관한 질의

5.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과제 인식

2005년 상속 및 증여세에 있어서 완전 포괄주의가 도입되는 등 사회발전에 따라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가 속속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과세공평성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매우 필요하지만 미진하고 도입되지 않고 있는 제도가 있어 이를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1)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 2)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확대
- 3) 간이과세제도 폐지
- 4) 소득세에 대한 포괄과세 방식의 도입
- 5) 금융 차명거래 금지
- 6) 세무조사 제도의 법제화

6.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 강화

외환위기 이후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빈곤층비중이 상승하는 등 소득불평등도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득불평등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이 우리 사회는 대단히 취약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의 강화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한 후보자의 세무행정 책임자로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7. 세무행정상 과세 사각지대 해소

고소득 자영업자 등으로 대표되는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것이 항상 국세청의 최우선 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목표는 아직까지 완결되지 못하였습니다. 국세청에서는 2005년부터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엄청난 규모의 탈세액을 적발하고 추징한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 고소득 자영업자, 집단상가, 유통업자, 불법거래 등은 근본적인 탈세 방지가 어려운 실정으로 개별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보다도 탈세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세정의 사각지대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지능적인 탈세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고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8. 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성과

지난 2004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해 완전포괄주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완전포괄주의의 실시 전후 달라진 조세 현상에 대한 정밀한 분석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완전포괄주의의 실시 이후의 납세자의 변화된 행태, 징세를 위한 행정비용의 변화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공개가 없는 상태이기는 하나, 표면적으로 완전포괄주의 도입 이후 상속세 결정세액은 이전보다는 대폭 증가하긴 했으나, 납세인원은 이전과 큰 차이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같이 완전포괄주의 도입한 지 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이 제도로 인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 및 규모 등 행정 집행상 변화 및 성과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은 무엇입니까.

9. 상속·증여세 폐지 및 인하 요구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재계에서는 과도한 상속세의 부담이 기업인의 의욕을 꺾는다며 상속세 인하 또는 폐지 문제를 공론화하고 있으며, 정기국회에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 인하를 위한 정부의 개정안이 심의 중에 있습니다.

재계는 높은 상속 증여세의 폐지나 인하가 세계적 추세이며, 특히 투기자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증여세 폐지 혹은 인하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 상속 증여세의 인하 및 폐지에 대한 논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속 증여세의 인하 및 폐지 요구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10. 신종 변칙 조세회피 수단에 대한 대응

최근 재벌 2세, 3세 등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을 통해서 부의 이전을 하는 방식이 신종 변칙 증여 행위로 지적 되면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를 통해서 상속·증여세를 물지 않는 '부의 이전'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변칙 증여 사례가 늘고 있고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불법성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이러한 신종 변칙 증여방식을 규제하기 위하여 어떠한 행정상 어떠한 조치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과세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III. 국제적인 조세회피 대처에 관한 질의

11. 외국자본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대처

최근 론스타, 칼라일 등 외국계 펀드의 투자과정을 통하여 외국자본의 적극적 조세회피 행위가 계속 알려지면서 과세논란 등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세조약을 악용하는 등 외국계 펀드의 다양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하여 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후보자의 구상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조세조약이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필요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또한, 이들은 과세관청을 비롯한 국내 정부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명 법무법인에 자문을 받아 조세회피 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를 법무법인에는 많은 전 국세청 국제조세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어 국세청에서 조세회피 행위에 적극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국계 펀드 등 외국자본의 조세회피 행위를 조장하는 법무법인과 과세를 막으려는 법무법인 소속의 전직 국세청 직원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IV. 조세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관한 질의

12. 공직후보자 등 사회지도층의 탈세 검증

최근 한 대통령 후보는 자신의 회사에 자녀 등을 위장 취업시켜 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밝혀지자 수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이전에도 많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탈세혐의가 들어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다른 일반 납세자와는 달리 사회지도층에 대하여는 일체의 세무조사를 착수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른 처리’라는 말만 되풀이 해왔습니다.

이러한 사회지도층의 탈세행위와 국세청의 대응은 많은 국민들에게 사회지도층은 탈세행위를 해도 처벌되지 않으며 성역으로 보호되고 있다는 인식을 줌으로써 건전한 납세의식을 형성하는 데 매우 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후보자는 공직후보자 등 사회지도층의 탈세행위가 알려지면 즉각적인 세무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여론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며, 앞으로 사회지도층에 대한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강제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 조세정보의 공개 확대

정부가 조세개혁을 추진에 있어 국민의 설득과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하고 다양한 조세정보를 공개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세청은 소득종류별, 업종별 탈세실태, 과세종류별·계층별 세 부담 통계정보 등의 기본적인 과세 정보 등을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 국민은 물론 조세를 연구하는 학자나 국회 의원들까지도 조세정책을 연구하고 법안을 제출하기 위한 기본적인 통계를 구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개인의 납세정보를 삭제한 미시 통계자료를 공개한다면 개인 또는 가구별 형태에 따른 소득액, 소비금액 및 세부담액을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되어 현실과 부합하는 조세정책을 고안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후보자는 현재 공개되고 있지 않은 국세정보 중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4. 조세범죄 행위의 치벌 확대

최근 그 비율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한 고발건수는 매년 엄청난 규모의 세무조사에 비하여 수백 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탈세범죄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는 국세청이 조세범처벌에 대한 의지가 높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조세범 처벌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회부기준, 위원회 구성과 운영, 회부절차, 고발기준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는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한 일각에서는 검찰이 조세포탈법을 처리하는데 있어 국세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야 하는 '고발전치주의'를 없애는 것이 조세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15. 사회보험의 통합징수 업무

우리나라 사회보험 제도는 4대 사회보험 간에 긴밀한 상호 연계성이 없이 도입되어 사회보험의가입자의 소득파악과 부과, 징수업무를 국세청과 별개로 하고 있는 현행 제도는 비효율적이기에 통합징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현재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국세청에서 사회보험징수공단을 두어 사회보험의 부과, 징수업무를 통합 운영하도록 하는 '사회보험통합징수법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사회보험의 통합징수 업무를 맡는 경우 이 업무의 운영 방향과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